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8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 폭행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
공공설비 근로자, 역사 및 터미널 청소원, 영장송달원 대상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폭행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공공설비 근로자(S2251-A / A4738-A), 역사 및 터미널 청소원(S8104 / A10048-B), 영장송달원(S2991-A / A6772-A) 등에 대한 폭행의 죄질이 경범죄에서 D 급 중범죄로 무거워집니다.

“뉴욕 주 공공시설 및 기관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이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과 공격이 갈수록 늘고 있다”,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 근로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다른 MTA 근로자와 응급의료 서비스 요원, 응급의료 서비스 기술자 등 이와 유사하게 폭행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 계층에 대한 보호망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몇몇 법률들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William Larkin 상원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제 지역구의 어느 공공설비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이야기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공공설비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성을 개선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신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Francisco Moya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A4738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 오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공공설비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만든 이 법안은 매일 일반 가정집들을 방문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사 간의 합심을 끌어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노동계의 형제자매들과 실업계, 동료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께 갈채를 보냅니다.”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법안(Senate Bill S. 8104-A)의 정식 입법에 서명하신 쿠오모 주지사께 열정적인 찬사를 보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MTA 역사 및 터미널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D급 중죄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인 운송부문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이 2002년에 제정된 바 있으나, 여기에는 역사 및 터미널 근로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쿠오모 주지사와 주 의회의 제 동료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사 및 터미널 근로자들도 보호받는 MTA 근로자 명단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위업에 참여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도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률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주지사 및 의회와 계속 협력하기를 열망합니다.”

Diana C. Richardso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면한 우리 뉴욕 주 노동 형제자매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주신 쿠오모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직원도 폭행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 바, 이 법령은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법의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주지사와 같은 입장에 선 것이 자랑스러우며,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atharine You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송달원은 우리 사법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뉴욕 주의 법무와 공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영장송달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 새로운 보호 입법은 영장송달원을 해하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더 강화하여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J. Gary Pretlow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송달원은 사법체제의 전달 행위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법집행 행위자인 경찰과 동일한 보호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번 입법은 영장송달원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한 보호 조치가 될 것이며, 법 제정에 서명하신 쿠오모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